

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박한범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개정이유

-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했던 조문이 「주거기본법」 및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변경 개정되어 각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위한 개정

3. 주요내용

-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했던 ‘주택종합계획의 수립’을 「주거기본법」의 ‘주거종합계획의 수립’으로 변경(안 제2조)
-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(안 제3조)
- 30년 이상 경과된 60㎡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(안 제4조)
-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했던 ‘주택정책심의위원회’를 「주거기본법」의 ‘주거정책심의위원회’로 변경(안 제5조)

- 지역별, 성별을 고려한 위원 구성(안 제6조)
-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(안 제8조)
- 위원의 수당 및 여비 규정(안 제13조)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근거법령이 「주택법」에서 「주거기본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 개정애 맞게 변경하며,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, 30년 이상 경과된 60㎡이하의 소형공동주택(아파트) 단지의 공용시설의 관리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,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하고 구성에 있어 지역별,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